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1318호)】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318호

나. 제 안 자 : 이태성 의원 외 11명

다. 제안일자 : 2020년 2월 5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사회투자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 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같은 조제3항의 “출연금” 을 “ 기금전출금” 으로 각각 변경함.

- 출 연 금 :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기금전출금 :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

나. 제명 등 피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5조).

【권영희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1428호)】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28호
- 나. 제 안 자 : 권영희 의원 외 9명
- 다. 제안일자 : 2020년 4월 3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2. 제안이유

-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금융기관은 자부담금 매칭융자, 최대 3%이내 이자율 책정 등 사회투자기금 운영 정책에 협조하고 있음.
-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융자) 계획 중 코로나19 직·간접 및 확진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연 0.5%~1.5%) 융자지원이 포

함되어 수행기관의 기존 수취이자(연 3%이내)에 대한 차액 보전이
필요함.

- 수행기관이 운용하는 市용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지속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안 제4조제7호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이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회투자기금의 재원인 서울시의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는 기금 수입항목으로의 변경을 통해 조례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음.
- 권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회투자기금 용자에 대한 이차 차액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사회투자기금 운용현황

- 서울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투·융자하는 사회투자기금(이하 “기금”)을 2012년부터 조성·운용 중이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¹⁾와 함께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20년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298억 1천 9백만원으로, 세부 수입·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음.

1) 기금의 융자사업은 역량이 풍부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융자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무이자로 융자하고, 일정배율의 매칭(시 : 민간, 3:1~1:1)을 통해 자금을 확대 조성한 후, 사회적기업에 연 3% 이내의 금리, 최대 5~8년의 상환조건(최대 2년거치, 원금분할상환)으로 재융자하고 있음.

<2020년 사회투자기금 수입·지출 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합 계	29,819	합 계	29,819
전 입 금	5,800	용자성 사업비	
		사회적경제기업 용자사업	11,500
용 자 금 이 자	374	소셜하우징 용자사업	3,500
		민간자산 클러스터	5,000
용 자 금 회 수	11,427	비용자성사업비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300
이 자 수 입	140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및 운영	242
		이차보전금	450
기 타 수 입	100	임팩트투자 출자금	1,000
		기본경비	200
예 치 금 회 수	11,978	예치금	
			7,627

- 기금은 처음 조성 후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및 프로젝트 등에 총 635건, 1,185억 4천만원을 용자지원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

<사회투자기금 용자실적>

(2019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건)

연 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용 자 기 금 액	합계	118,540	21,123	9,348	15,954	21,331	13,356	18,171	19,257
	市기금	90,464	10,900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3,850
	민간기금	28,076	10,223	1,860	1,342	667	3,472	5,105	5,407
지원건수	635	72	44	81	65	170	137	66	

- 그러나 누적용자금 증가에 비례하여 연도별 채권 잔액 또한 증가하고 있어, 용자금의 적기 회수와 부실 채권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사회투자기금 용자상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도별 채권 잔액			15,790	25,388	40,462	41,335	48,691	59,439
채권 이월액(B-A)		53,829	4,890	9,598	15,074	873	7,356	10,748
지출	용 자 금(A)	85,189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6,350
수입	용자원금상환(B)	31,360	2,598	5,014	5,590	9,011	5,710	5,602

다. 기금의 조성 재원 용어 정비 (이태성 의원 안 제3조제2항)

- 현행 조례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용자상환금과 ▷기금 회수금으로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조례상의 기금 재원인 “시의 출연금”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기금운용기준’)에 맞춰 변경하고 있음.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목적 수행하는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의 조성재원 성격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종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출연 경비를 “출연금” 으로 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이를 “전입금” 으로 변경해 기금운용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2012년	2020년
① 출연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24) 및 기초단체의 광역단체에의 사업비 부담금(227-01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계상	① 전입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21)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222-01) 등 계상

- 현행 기금운용기준의 기금 수입항목은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9개 과목임[참고자료].

- 다만 개정안에서는 “시의 기금전출금” 으로 변경 제안하였으나, 일반·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서는 “전출금” 으로 표기하고, 받는 기금에서는 이를 “전입금” 으로 표기하는 것이 기금운용기준에 적합함.
- 따라서 개정안의 “기금전출금” 은 “전입금” 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의 다른 수입항목 또한 기금운용기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 정 안	수 정 의 건
1.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u>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회수금 등</u>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신 설> ③ (생 략)	1. <u>시로부터의 전입금</u> 2. 기금의 운용으로 <u>인한 이자수입</u> 3. <u>융자금회수, 차입금, 예수금</u>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 <u>기타 수입</u> 5. <u>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u> ③ (개정안과 같음)

라. 기금의 용도에 이차보전 추가 (권영희 의원 안 제4조제7호 신설)

-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자, 기존의 융자지원을 특별 자금지원(특별융자, 기존융자기업 대상 대환대출 및 만기 연장 등)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음.
-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는 확진 및 직·간접 피해 사회적기업²⁾을 대상으로, 0.5~1.5%의 저리로, 최대 3억원, 2년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하며, 수행기관에 연 이자율 3% 기준으로 이차차액을 보전하고 있음.

<사회투자기금 특별융자 금리 및 융자조건>

구 분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간접피해기업
용 자 한 도	사회적경제기업 최대 3억원 (채권잔액 기준)		
금 리	0.5%	1.0%	1.5%
이 차 보 전	2.5%	2.0%	1.5%
용 자 조 건	2년거치 4년 상환조건		

2)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코로나19 피해기업 융자지원 대상 기준 적용[참고자료2]

- 대환대출은 기금을 통해 융자받은 사회적기업 중 확진 및 직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융자 조건을 적용하여 기존 채권잔액을 신규 융자금으로 대환하고, 기업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를 실행하고 있음.
- 특별 만기 연장은 매출액이 전전월 대비 신청 전월·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한 확진 및 직접피해기업에 한해 연장기간 동안 이자를 정상 납부하는 조건으로 최대 1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음.
- 특별 자금지원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종료 또는 해지일 기준 최대 3개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잔여자금은 기존 운용 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할 계획임.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융자 지원은 피해기업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트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완화된 융자조건으로 인한 대출금 증가는 미회수·부실채권의 확대와 소멸성 비용인 이차보전금의 증가로 이어져 기금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편 개정안은 신규 특별융자 시행으로 기금을 통한 이차보전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제도를 조례로 현행화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임.

- 현행 조례상 기금의 용도인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을 근거로도 사업수행은 가능하나, 이차보전에 대한 사업근거를 보다 명확히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입법적 동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신설되는 안 제4조제7호의 “(사회적)금융기관” 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제4조제2호의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과 일부 중복되며, 이차보전 지원 대상 또한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기금을 통한 이차보전은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 대환대출에 대한 지원이 유일하므로 “수행기관³⁾의 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등 의미와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2.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3.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6. (개정안과 같음)

3) 조례 제2조(정의) 4. “수행기관”이란 시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등 사회적금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 정 안	수 정 의 견
4.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에 대한 지원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용자사업비 지원 7. <u>(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u> 8.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	7. <u>수행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u> 8.~9. (개정안과 같음)

마. 종합의견

- 이태성의원 대표발의안은 기금의 조성재원을 기금운용기준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것임.
- 권영희의원 대표발의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기업을 위해 신설하는 기금의 이자차액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두 건의 개정안은 입법의 시의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표현에 있어 의미와 대상이 불명확하여 오역의 소지가 있는 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용어로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

[참고자료]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구 분	과 목
수입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보조금(500)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이자수입(216-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수입(713-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6), 통화금융기관 융자금(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216-03)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722-03)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3),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지출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 공사공단 등 융자금(513-03)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차입금원리금 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 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11,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등	

[참고자료 2] 확진 및 직·간접 피해기업 구분

가. 직접피해기업

- 1순위 지원 : ①, ② 요건 동시 충족
- 2순위 지원 :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② 요건을 충족
- 3순위 지원 :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① 요건을 충족

① 피해업종 (22개 항목)

품목코드	산업명
H49~H52	운수업
I55	숙박업
I56	음식점 및 주점업. 단,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제외
G45~47	도매 및 소매업
M72924	지도제작업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Q862	개인병원
R90232	자연공원 운영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R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R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R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2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R912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Q87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서비스
P85	교육 서비스업
C10~C22	제조업 단, 12(담배제조업) 제외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② 전전월대비 전월 또는 전년 동월대비 매출액 30%이상 감소한 사회적경제기업

나. 확진피해기업 조건

-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CV 확진자 이동경로 상 영업장소를 명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나 종업원이 강제격리(확진자)나, 자가격리(접촉자)를 실시하여 영업을 일시중단한 경우

※ 보건소 격리통지서 제출 및 영업중단 사실 확인 필요(격리 기간의 절반 이상의 기간동안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입금 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핸드폰사진, 화면캡처, 인쇄물 등으로 입증)

다. 간접피해기업 : 직접이나 확진 피해기업 외 모든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